

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여러분

해외이주·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·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

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시 전액상환 의무가 부과되며 제44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
대상자 Check!

- ✓ (한국장학재단)취업 후 상환 학자금(ICL)대출 잔액 보유자이다
- ✓ 해외이주 예정이거나 6개월 이상 유학 예정이다

출국 전 해외이주·유학 신고하러 GO GO!

신고방법

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로그인 ▶ 학자금대출 ▶ 학자금뱅킹 ▶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▶ 해외이주/유학신고

모바일 앱 로그인 ▶ 학자금대출 ▶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▶ 해외이주/유학신고

신고의무 및 상환의무

	해외이주	해외유학
신고 의무	- 해외로 이주(연고이주, 무연고이주, 현지이주) 하려는 채무자	- 해외로 유학(연수, 연구, 워킹홀리데이, WEST프로그램, 해외인턴십, 해외봉사 등) 하려는 채무자
상환 의무	-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- (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) 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약정	- 유학 신고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유지 -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턴 1년 후까지 귀국신고* 하지 않을 경우 전액상환 의무 부과 *유학 연장시, 연장신고 필요

문의처

콜센터 대출현황 및 자발적 상환, 해외이주·유학신고 관련 문의(☎ 1599-2000)

홈페이지 www.kosaf.go.kr ▶ 고객센터 ▶ 온라인 고객상담